

제211회 영등포구의회
2018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12. 12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4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임사무 일부 신설

- 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(안 별표 제46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료법」 및 「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의 정비를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별표 제46호에 「의료법」에서 구청장에게 지정된 “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”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문 신설.
- 검토 결과, 본 개정 조례안은 「의료법」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며,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의료법

제38조(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)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(이하 "특수의료장비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제2조(등록) ① 「의료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(이하 "특수의료장비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(이하 "개설자등"이라 한다)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제4조(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) 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영등포구의회
제211회 제2차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
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12. 12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5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 스마트메디컬(Smart-Medical)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추진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 도시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12조에 따라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대외적 표시 및 특화사업의 범위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규제특례사항(안 제5조)
- 라. 규제특례의 사후관리(안 제6조)
- 마. 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(안 제7조)
- 바. 재원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2017.12월 영등포구가 스마트메디컬 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, 의료관광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,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 -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,
 -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특구의 대외적 표시와 특화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특례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서
 - 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추천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 - 「도로교통법」 및 「도로법」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

업 추진 시 도로점용,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,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,

- 「의료법」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 시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나 동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,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,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규제특례의 사후관리사항, 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,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,

- 본 조례 제정으로, 우리구에 소재한 의료자원의 활용과 문화·예술·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, 특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의료기관의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 등,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메디컬특구 활성화에

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, 특례적용으로 완화받는 건축물이 타 용도로 변경될 경우나, 기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지도와 더불어, 특례적용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일정부분은 구민을 위한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

제12조(조례의 제정) ① 특구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(이하 "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-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과 맞아야 한다.
-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①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(査證)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(「도로교통법」에 관한 특례)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(牛馬)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3조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

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(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종류·모양·크기·색깔·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·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·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30조(「의료법」에 관한 특례)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「의료법」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32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① 도시·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관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특구계획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
2. 특구토지이용계획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

제33조(「도로법」에 관한 특례)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「도로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, 이 경우 특구계획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·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.